

2027학년도 (가칭)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요항

I 모집정원

모집정원은 남녀 구분 없이 100명(학급당 20명, 5학급)이며,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함

전형방법	구분	대상	모집 인원	비고
자기주도 학습전형	정원 내	일반전형	80명	지역인재선발* 최대 20명 포함
		사회통합전형	20명	
	정원 외	국가유공자자녀[교육지원대상자]전형	3명 이내	
		특례입학전형	2명 이내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약간 명	
		지역균형선발**	3명 이내	

[지역인재선발 및 지역균형선발 지원 자격]

- 별도 지원 없이 일반전형으로 지원하며 **원서접수 시작 전일(2026. 8. 23.)**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확인함. 단, 학군 배정 등의 제도적 사유로 타 시군의 중학교에 배정된 자도 지원 자격을 인정함
- 선발 비율은 관련 규정과 전형 운영 여건, 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 학년도 조정될 수 있음
 - * 지역인재선발: 성남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 지역균형선발: 정원 내 최종 선발 결과, 합격생이 없는 시군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II 지원자격

구분	지원 자격
공통자격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타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전국단위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며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위 1항 및 4항의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기졸업예정자와 제4조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자를 의미하며, 1항은 「경기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중학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학교장으로부터 조기졸업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자, 4항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조기졸업 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함 ※ 위 2·4항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사회통합전형	본교에서의 수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다음 1, 2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붙임> 참조 - 기회균등 대상자(1순위) - 사회다양성 대상자(2, 3순위) ※ 위 2항은 소득 분위 8분위(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함 -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환산액에 대한 건강 보험료 납입금 기준
국가유공자자녀 [교육지원대상자]전형	정원 외 보훈(지)청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통보받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특례입학전형	정원 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③항의 다음 제2호, 제3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2호.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 부모의 거주기간은 2년 이상, 체류기간은 1년 이상, 학생은 2개 학년 이상 이수한 경우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정원 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③항의 다음 제1호, 제4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호.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 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4호. 교육감이 학력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사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정원 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①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여부는 경기도특수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정하는 사항임)

공통사항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제외)

- **전형요소** : 학업소양, 탐구력, 핵심인성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습잠재력과 수학·과학 분야의 자기주도학습역량을 평가
- **전형절차 및 주요사항**
 - **1단계 [서류평가]**
 - 내신 성적은 성취평가제로 산출된 최근 4학기의 수학, 과학 성적(성취도 및 수강자 수)을 반영
 - 제출된 서류를 통한 수학·과학 분야의 열정 및 학업소양, 탐구력, 핵심인성역량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 **2단계 [개별면담]**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
 - 지정된 면담 일시에 본교에 출석하여 개별면담 실시(면담 일시는 수험표로 개별 확인)
 - 필요시 지원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를 입학담당관이 방문하여 지원자 및 추천 교사, 담임 교사와 면담을 실시할 수 있음
 - **3단계 [소집면접]**
 - 탐구력, 창의적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 소집면접일에 본교에 출석하여 소집면접 실시

□ 일반전형

1. 모집정원: 80명
2. 전형방법
 - 가. 1단계 전형 결과 3배수(240명) 내외의 개별면담 대상자 선발
 - 나. 2단계 전형 결과 1.5배수(120명) 내외의 소집면접 대상자 선발
 - 다. 서류평가 및 개별면담과 소집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80명 선발
 - 단, 3단계 전형 결과 본교 교육과정 이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학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역인재선발은 별도 지원 없이 일반전형과 통합하여 전 단계를 동일하게 진행하며, 3단계 전형 대상자(소집면접 대상자) 중 입학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우선 선발

□ 사회통합전형

1. 모집정원 : 20명 (단,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 미달일 경우, 지원 미달 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일반전형으로 충원할 수 있음)
 -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2. 전형방법
 - 가. 1·2단계 : 서류평가와 개별면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소집면접 대상자로 2배수(40명) 내외를 선정하되, 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선발
 - 1) 1순위 지원자를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1.5배수(30명) 이내에서 우선 선발
 - 2) 1순위 지원자를 선발한 후 부족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1.5배수 이내에서 2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 3순위 대상자를 선발하며, 우선순위 모집으로 인해 지원 기회를 잃은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하여 전형
 - 나. 3단계 : 소집면접을 실시한 후 서류평가 및 개별면담과 소집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20명 선발
 - 1) 1순위 지원자로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의 60%(12명)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
 - 2) 1순위 선발 인원을 제외하고 남은 모집인원은 1순위 탈락자, 2·3순위 대상자를 포함하여 순위에 관계없이 통합 선발
 - 다. 같은 순위 내의 대상자 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음
 - 라. 2027학년도 경기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선발 절차에 따름

□ 정원 외 전형

1. **국가유공자자녀[교육지원대상자] 전형(3명 이내)**

서류평가 및 개별면담과 소집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본교 수학 가능 여부를 심의하여 선발
2. **특례입학전형(2명 이내)**

서류평가 및 개별면담과 소집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본교 수학 가능 여부를 심의하여 선발
3. **특수교육대상자전형(약간 명)**

평가 및 면접 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실시하고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학생의 수학 능력을 판단한 후 학교장 의견서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에 송부하며, 최종 배치는 경기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
4. **지역균형선발(3명 이내)**

별도 지원 없이 일반전형과 통합하여 전 단계를 동일하게 진행하며, 정원 내 최종 선발 결과 합격생이 없는 시군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해당 시군 상위 1명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본교 수학 가능 여부를 심의하여 선발

 - 서류평가 및 개별면담, 소집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발

IV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2026. 8. 24.(월) ~ 8. 28.(금) 17:00	교사의견서 제출 : 8. 24.(월) ~ 8. 31.(월) 17:00
1단계 [서류평가]	2026. 9. 1.(화) ~ 9. 18.(금)	
2단계 대상자 발표	2026. 9. 21.(월) 14:00	본교 홈페이지
2단계 [개별면담]	2026. 10. 1.(목) ~ 10. 31.(토)	본교 지정 장소
3단계 대상자 발표	2026. 11. 16.(월) 14:00	본교 홈페이지
일반전형 3단계 대상자 추가 서류 제출	2026. 11. 16.(월) ~ 11. 18.(수)	VI. 제출 서류 참고
3단계 [소집면접]	2026. 11. 20.(금)	본교 지정 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1. 26.(목) 17:00	본교 홈페이지

※ 본 전형 일정은 경기도교육청 지침 변경과 조정 및 본교 교육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형 관련 세부 일정 및 방법 안내: 「본교 홈페이지(<https://bdja-h.goesn.kr>) - 과학고 입학안내 - 공지사항」

V

원서접수 방법

대 상	원서 접수 방법		제출서류		
			공통	지원자격별	교사의견서
경기도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고교입학시스템 ¹⁾		온라인접수 ²⁾	등기우편 ³⁾	별도 안내
경기도내 중학교 졸업자	고교입학시스템 ¹⁾ (출신 중학교 작성)				
타 시·도 졸업예정자/졸업자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 ⁴⁾ (대국민 서비스)				
검정고시 합격자					
특례입학전형	본교 방문 접수 ⁵⁾				
구 분	대상자			납부 방법	
	1단계 전형	2단계 전형 (1단계 합격자)	3단계 전형 (2단계 합격자)		
전형료 ⁶⁾	10,000원	10,000원	10,000원	계좌이체	

1) 원서는 답임교사가 고교입학시스템에서 작성

- 업무포털시스템(<https://goe.edupl.kr>) 로그인 후 상단의 [고교입학시스템] 메뉴 이용
- 경기도교육청 고교입학시스템(<https://high.goe.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2) 자기소개서는 원서 접수 단계에서 입력해야 하며, 원서 승인 후에는 수정 불가

교사의견서는 원서가 승인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이후, 본교 홈페이지의 팝업 창을 통해 접속하여 작성

3) 등기우편 발송 주소: (136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74 (정자동) 분당중앙고등학교 입학관리부

4)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 포털(대국민 서비스) <https://satp.goe.go.kr>

5) 방문접수: 입학관리부(031-8020-8273)로 사전 연락 후 방문

6) 원서 접수 후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단계별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단계 전형에서 제외함)

- 사회통합전형, 국가유공자자녀(교육지원대상자)전형 대상자는 전형료를 면제함
- 납부 방법 상세 안내: 「본교 홈페이지(<https://bdja-h.goesn.kr>) - 과학고 입학안내 - 공지사항」

구분		제출 서류	접수 방법			제출 형식
			온라인	등기 우편	방문	
공통		- 입학원서 1부 ❖ 타 시·도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해 출력물에 학교장 직인, 지원자 및 보호자 서명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	○ (해당자)		온라인 입력
		- 자기소개서 1부	○			온라인 입력
		- 학교생활기록부Ⅱ(고입용) 1부 ❖ 소속 중학교에서 공문(전자문서)에 첨부하여 제출 ❖ 2026. 8. 21.(금) 기준 출결마감(특이사항 기록 포함) ❖ 출력 옵션 : 교과학습발달상황 내 원점수/표준편차 제외, 영재기록사항 제외 ❖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 최종 학교 학교생활기록부Ⅱ 등기우편 제출	○	○ (해당자)		pdf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의학학계열 지원 제한 동의서 1부	○			pdf
		- 교사의견서(수학, 과학, 정보 교사 중 1인) 1부	○			온라인 입력
일반전형 3단계 대상자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제도적 사유로 타 시군의 중학교에 배정된 자 : 중학교 배정 사실 증명서 1부 ❖ 2026. 11. 18.(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지원 자격 별 제 출 서 류	졸업자	-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다는 사실 관계 증명서 1부 (예) 제적증명서, 미진학사실확인서 등		○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 고입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고입검정고시 성적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학력인정학교 또는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조기졸업예정자	- 조기졸업(예정)증명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자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확인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사회통합전형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각 1부 <붙임> 참조 ❖ 1순위 ⑦ 학교장 추천 학생 :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증빙서류 공문 제출		○		
	국가유공자자녀 [교육지원대상자]전형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국가보훈지청장 발급)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서류 없음)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특례입학전형	- 특례입학 지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 - 기타 제출 서류는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자료실에서 확인			○	
특수교육대상자전형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서(본교 소정 양식)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카드(본교 소정 양식)		○		

※ 접수 방법은 경기도교육청 지침 변경과 조정 및 본교 교육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방법 상세 안내: 「본교 홈페이지(<https://bdja-h.goesn.kr>) - 과학고 입학안내 - 공지사항」

※ 전형 관련 양식 다운로드: 「본교 홈페이지(<https://bdja-h.goesn.kr>) - 과학고 입학안내 - 자료실」

1. 학교장 추천서는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고교입학시스템을 이용한 입학원서 제출[결재]과정으로 같음
2.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고교입학시스템 원서 작성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 증명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4. 사회통합전형 및 일반전형 3단계 대상자 제출서류는 제출일 이전 7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여야 함
5. 원서접수 후 지원 자격별 추가 제출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되, 8월 28일(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함
 • 단, 특례입학전형 지원자는 본교에 방문 접수하여야 함
6. 학교생활기록부Ⅱ(고입용)는 **3학년 1학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입력 항목을 작성함(출결 특기사항, 학교폭력 조치상황 등 기록 포함)
 • 담임교사가 나이스에서 pdf로 출력·저장하여 원서작성 시 첨부함(출결 마감일: 2026. 8. 21.(금))
 •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특례입학전형 지원자의 경우 본교 입학관리부로 문의 바람
7. 자기소개서는 자기주도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 평가가 가능하도록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대리작성, 허위 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 】

- ① 올림피아드(KMO 등), 교내·외 각종 대회 등 입상 실적, 영재학급·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② TOEFL·TOEIC·TEPS·TESL·TOSEL·PBT, HSK, JLPT 등 각종 어학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③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 ④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둠 및 프로젝트 활동(시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자기소개서에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의 ①, ②의 항목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전형 단계의 최하 등급 처리하며, ③, ④의 항목이 포함된 경우 최저 등급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등급을 한 단계 이상 강등 처리함

8. 교사의견서 작성은 해당 중학교에 재직 중인 수학, 과학, 정보 교사로 한정함
 •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와 특례입학전형(정원 내) 대상자의 교사의견서 작성 가능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1) 지원자가 재학했던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 2) 기타
 ※ 단, 학원 강사 등 사교육기관 관계자, 지원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 교사의견서 작성 시 배제 사항 】

- ① 올림피아드(KMO 등), 학교 내·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영재학급·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② 학생의 교과 성적,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등
- ③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내용, 개인 정보 관련 사항 등
- ④ 기타 사교육이 유발될 수 있거나 입학 전형에 불필요한 내용

※ 【교사의견서 작성 시 배제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중학교에 재작성을 통보하며 불응하는 경우 당해 학생은 전형에서 배제됨

1. 본교 지원자는 전국 소재 다른 전기고등학교에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음 (단, 8개 영재학교는 이중 지원 가능)

※ 이중지원 금지

- 전기고등학교는 전형 시기와 관계없이 1개교만 지원할 수 있음
- 전기고등학교 합격 시 후기고등학교(외고, 국제고, 자율형 공·사립고, 일반고 등) 지원 불가

2.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3. 입학 전형 과정에서 학생 개인의 세부 평가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4. 본교 합격자는 전원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과학고 전환에 따른 시설 구축 일정에 따라 일부 교육시설 및 기숙사 이용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숙사 운영은 필요 시 외부기관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음
5. 고교입학시스템 및 경기도교육청 입학전학 포털에서 단계별 대상자 및 최종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6. 의약학계열 대학 지원 시 제재 방안

본교는 과학, 수학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의·치의·한의·수의·약학 계열 대학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 지원이 적합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치의·한의·수의·약학 계열 대학에 지원할 경우,

가. **[진로·진학 지도 미실시]** 본교 교원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진로·진학 지도를 하지 않으며, 모든 대학의 추천서를 작성하지 않음

나. **[교육비 및 장학금 환수]** 과학고 교육활동에 지원된 교육비와 재학 중 받은 모든 장학금(교내 및 교외)을 환수하며, 각종 수상 및 장학금 수여 대상에서 제외함

다. **[학교 시설 이용 제한]** 정규 수업 시간 이외 시간 학교 시설(학습실, 기숙사, 급식실 등) 이용을 제한함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작성 과정에서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7. 최종 합격자 발표 후 결원 발생 시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에게 개별 통보함 (해당 중학교 공문 발송)
8. 기타 전형요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관련 지침 및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하며, 지원 현황에 따라 단계별 선발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행정예고 1 지역인재선발 및 지역균형선발 지원자격 단계별 적용

- 본 전형은 기초자치단체-학교-교육청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연계 특화 교육을 실현하고자, 과학고 설립·운영 재원을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함에 따라 도입함
- 별도 지원 없이 일반전형으로 지원하며, 2027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 시작 전일(2026. 8. 23.)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확인함. 단, 학군 배정 등의 제도적 사유로 타 시군의 중학교에 배정된 자도 지원 자격을 인정함.
- 선발 비율은 관련 규정과 전형 운영 여건, 지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 학년도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자격 단계별 적용 지침
 - 1) 지역인재선발 : 성남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2028, 2029학년도 지원자 : 2026. 8. 23.부터 성남시 소재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2030학년도 지원자 : 성남시 소재 중학교에 1학년 3월 입학일부터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2) 지역균형선발 : 정원 내 최종 선발 결과, 합격생이 없는 시군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2028, 2029학년도 지원자 : 2026. 8. 23.부터 해당 지역 소재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2030학년도 지원자 : 해당 지역 소재 중학교에 1학년 3월 입학일부터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행정예고 2 학교생활기록부Ⅱ(고입용) 반영 학기 조정(2029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시행)

- 3단계 전형 시(소집면접 대상자) 3학년 2학기 추가 서류 평가 진행
- 평가자료 : 학교생활기록부Ⅱ(고입용) [학적, 출결상황, 성적*, 학교폭력 조치상황 포함]
- 제출 시기 : 소집면접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학교생활기록부Ⅱ(고입용) 내용과 전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

* 성적: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별 중간 내신을 산출하여 반영

우편번호 : 13604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74 (정자동) 분당중앙고등학교 입학관리부

입학상담 : (031) 8020-8273, 8275~6 행정실 : (031) 8020-8208 FAX : (031) 713-1595

학교 홈페이지 : <https://bdja-h.goesn.kr>

2026년 5월 20일

분 당 중 앙 고 등 학 교 장



※ 증빙서류는 제출일 이전 7일 이내 발급한 서류여야 함(아래 표에서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전형 관련 양식 다운로드: 「본교 홈페이지(<https://bdja-h.goesn.kr>) - 과학고 입학안내 - 자료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공동 제출 서류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서(본교 소정 양식) 1부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공지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등본상 부, 모 중 한 명만 있을 경우 그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구분	선발 순위	지원자격	구분	제출 서류	발급처
기 회 균 등 대 상 자	1 순 위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 수급자증명서 1부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② 법정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1부	주민센터, 복지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1부	주민센터, 복지로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대상자 확인서 1부	주민센터, 복지로
			차상위 우선돌봄대상자	- 우선돌봄대상자 확인서 1부	주민센터, 복지로
		③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구, 차상위계층)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교육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1부	구청, 주민센터
		④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관할 보훈지청
			기타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1부	
		⑤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주민센터, 정부24, 복지로
		⑥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구, 차상위계층)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교육비지원대상자	- 교육비지원확인서 1부	학교
		⑦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구,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 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선정 예시] -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 가게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 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 확인서」에 등 사실을 명기 [객관적 증빙서류의 예]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등 관련 기관

2, 3 순위	소득 8분위(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중병 서류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 환산액에 대한 건강 보험료 납입금 기준)	발급처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1부 (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1)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한부모가정’ 은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거주를 같이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이하 확인서)에 지원 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료를 제출하되, 거주와 확인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에 지원 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의 자료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확인서발급 - 병문 온라인 팩스 등

구분	선발 순위	지원 자격	제출 서류
사 회 다 양 성 대 상 자	2 순 위	① 소년·소녀가장 (형제·자매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및 본인 모두 기재)
		② 조손가정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및 본인 모두 기재)
		③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행)
		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 순직확인서 1부
		⑤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혼인관계증명 포함) - 국적취득증명서(국적 취득 시) 또는 여권 사본(국적 미취득시) 1부 - 외국인 등록 증명서 1부(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3 순 위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과정 (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 중인 졸업예정자 (단, 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	- 중학교 세부주소가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 (첫째 자녀부터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③ 준사관/부사관 자녀	- 재직증명서 1부(총 재직기간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2026년 2월 28일 이전부터 원서 접수일 현재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중학교 세부주소가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
		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1부(근로복지공단)
		⑥ 한부모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혼인관계증명 포함)

□ **사회다양성 대상자 적용 기준**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103,000	148,138	79,647	-
2인	6,719,000	243,833	181,659	247,763
3인	8,575,000	309,777	264,935	318,043
4인	10,392,000	374,300	338,641	390,974
5인	12,091,000	457,613	435,046	490,306
6인	13,690,000	535,512	525,833	584,741
7인	15,225,000	584,741	579,249	634,423
8인	16,759,000	634,423	628,429	712,921
9인	18,294,000	712,921	697,282	838,330
10인	19,829,000	712,921	697,282	838,33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수 산정**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학생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 포함, 조부·모가 없는 경우 외조부·모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유의사항**

-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는 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적용**하고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를 확인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은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거주를 같이**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지원 학생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부 또는 모의 자료를 확인 (거주와 확인서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에 지원 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의 자료를 확인)
- 휴직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유예 기간을 제외한 휴직 전후 보험료 납입 기준을 적용하되, **최근 납부를 기준으로 함**
- 적용 기간 중 보험료 연납정산 후 **환급을 받거나 더 많이 낸 경우**: 보험료 정산 금액까지 포함하여 평균액을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도 합산 적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혼합’ : 보호자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 다른 한 명이 지역가입자인 경우